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7. 6. 13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5월 24일,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7년 5월 26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1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17년 6월 13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세무1과장 김영미

가. 제안이유

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징수규정을 납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「지방세징수법」으로 분리·제정하고 「지방세기본법」은 전부개정(법률 14474호, 2016. 12. 27. 공포, 2017. 3. 28. 시행)됨에 따라, 이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징수 조례」로 이관하고, 이 조례는 「지방세기본법」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법령과의 관계, 부과·징수의 권한 위임 등을 규정함 (안 제1조, 제2조, 제3조)
-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4조)
- 지방세기본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류송달의 방법, 교부금전의 예

- 탁,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 등을 규정(안 제5조, 제6조, 제7조)
○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을 정함(안 제8조)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유준상)

- 본 개정조례안은

지방세 징수규정을 납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「지방세징수법」으로 분리·제정하고 「지방세기본법」은 전부개정됨에 따라, 이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징수 조례」로 이관하고, 「지방세기본법」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임.

- 검토의견으로는

「마포구 구세 기본조례」 10개 조항 중 2개의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항을 「마포구 구세 징수 조례」로 이관하고 「지방세기본법」 개정에 알맞도록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상위법령인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「지방세징수법」의 제·개정에 따라 내용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